검 토 보 고 서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 주 시 의 회

전문위원 김 형 열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조례 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상담기능을 지원기능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 본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 본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무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제는 가정도 청소년 육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에 청소년상담 위주의 정책에서, 이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에 청소년들이 적응하는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가정등의 교육과 위기구조,

치료,자활지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지원 기관으로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안 제2조의 “청소년 상담실”을 “청소년 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6의2에서 정한 청소년 지원기관을 설치할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안 제4조에서 센터의 기능을 기존에 상담실 기능에다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치료, 자활지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제6조에서 가정의 지원 책무을 강조하였는데, 가정의 근간인 부모의 청소년 지원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할텐데 센터의 기능에서 청소년 관련 부모의 교육 기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 안 제5조에서 센터의 조직을 소장, 상담원, 행정원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9조 까지는 센터 직원의 임용, 신분, 복무, 보수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중에 신분에 대하여 구체적 인용 규정이 없어서 행정기관

이 운영하는 기관인데, 직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시에 대비한 적용 규정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1조에서 센터의 직원의 보수. 수당등을 "경기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상담원은 행정기관에 보조적인 수시 인력이었으나, 상담센터는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고, 기관의 직원은 정년을 보장 받는 신분으로 변경되었느데, 보수 지급기준도 행정내부의 임의 규정인 지침을 준용할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기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 제16조에서 센터는 직인을 비치.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제14조에서 센터의 운영은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시의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것임에도, 센터는 직인을 사용하여 문서생산등에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을것이므로 운영상에 시의 방침과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